

의안번호	제495호
의 결 연 월 일	2013년 6월 일 (제321회)

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심기보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3년 6월 3일

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기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9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3년 6월 3일
발의자 : 심기보, 김희수, 김봉희,
김형근, 임현, 정지숙,
이수완 의원

개정이유

- 충청북도 공인조례의 근거법령인 「사무관리규정」 이 2011년 12월 21일 개정을 통하여 제명이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으로 변경되고, 동규정 제41조가 제40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,
- 직제변경에 맞게 문서과를 총무과로, 정보통신과장을 정보화담당관으로 변경하며,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의 자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근거법령 변경(안 제1조)

- 사무관리규정 제41조
→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

나. 직제변경에 맞게 명칭 변경(안 제8조 및 제12조)

- 문서과 → 총무과
- 정보통신과장 → 정보화담당관

다.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변경

- ~의 규정에 의하여 → ~에 따라
- 띄어쓰기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총무과 협의함.
- 나. 예산조치 : 없음
- 다. 기타
 - (1)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.
 - 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하여”를 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”로, “그 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(이하 “소속행정 기관”이라 한다)”를 “그 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제91조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91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문서과”를 “총무과”로, “소속행정기관”을 “그 직속기관·사업 소·출장소(이하 “소속행정기관”이라 한다)”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목 “(공인의재료)”를 “(공인의 재료)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제89조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89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제1항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정보통신과장”을 “정보화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규정에 의하여”를 “규정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인사발령등으로”를 “인사발령 등으로”로,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정보통신과장”을 “정보화담당관”으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일치여·부등”을 “일치여부 등”으로, “심사후”를 “심사 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발행·발급·발신등”을 “발행·발급·발신 등”으로, “등·초본등”을 “등·초본 등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기타의”를 “그 밖의”로,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7조 제목 “(공인의 사고 보고등)”을 “(공인의 사고 보고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처리전말등”을 “처리전말 등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제5조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5조에 따라”로, “당해기관”을 “해당기관”으로, “인쇄공인규격등”을 “인쇄공인규격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유출사고등”을 “유출사고 등”으로, “받은다음”을 “받은 다음”으로 한다.

제19조 본문 중 “증명발급등”을 “증명발급 등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의하여</u> 충청북도 및 그 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(이하 "소속행정기관"이라고 한다)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, 규격, 등록, 재등록, 폐기 공고방법, 관수 방법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</u> 충청북도 및 그 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, 규격, 등록, 재등록, 폐기 공고방법, 관수방법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생략)	제2조 (현행과 같음)
제3조(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)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「지방재정법」 <u>제91조 규정에 의거</u> 징수관, 경리관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관리관, 채무관리관,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.	제3조(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)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「지방재정법」 <u>제91조에 따라</u> 징수관, 경리관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관리관, 채무관리관,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.
제4조(공인의 비치 및 사용) ①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의 공인은 <u>문서과</u> 에, 보조기관, <u>소속행정기관</u> 및 <u>기타</u> 기관장의 공인은 문서 취급부서에 각각 비치 사용한다.	제4조(공인의 비치 및 사용) ①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의 공인은 <u>충무과</u> 에, 보조기관, <u>충청북도 및 그 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</u> (이하 "소속행정기관"이라 한다) 및 그 밖의 기관장의 공인은 문서 취급부서에 각각 비치 사용한다.

현 행	개 정 안
② (생략) ③ 제1항 내지 <u>제2항의 규정에 의한</u>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비치 사용할 수 있다. ④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 내지 <u>제2항에 따른</u>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비치 사용할 수 있다. ④ (현행과 같음)
제5조 (생략)	제5조 (현행과 같음)
제6조(<u>공인의 재료</u>)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.	제6조(<u>공인의 재료</u>)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.
제7조(각인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「지방재정법」 <u>제89조 규정에 의거</u> 수입대체경비출납원, 수입금출납원, 일상경비출납원,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,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.	제7조(각인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「지방재정법」 <u>제89조에 따라</u> 수입대체경비출납원, 수입금출납원, 일상경비출납원,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,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.
제8조(공인의 등록·재등록) ① (생략) ② <u>제1항에 의하여</u>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등록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 <u>의거</u> 총무과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.	제8조(공인의 등록·재등록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제1항에 따라</u>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등록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 <u>따라</u> 총무과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p>③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(재등록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의하여 총무과에 등록하고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무과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을 관리하며, 전자이미지관인은 <u>정보통신과장</u>이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며, 그 소속행정기관장의 직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(공고) <u>공인(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)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전자이미지관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을 <u>규정에 의하여</u>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③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(재등록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의하여 총무과에 등록하고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무과가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을 관리하며, 전자이미지관인은 <u>정보화담당관</u>이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며, 그 소속행정기관장의 직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.</p> <p>제9조(공고) ① <u>공인(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)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전자이미지관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을 <u>규정에 따라</u>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공인대장) ① 총무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(전자이미지관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<u>의한다</u>)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, 재등록 또는 폐기시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제10조(공인대장) ① 총무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(전자이미지관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<u>따른다</u>)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, 재등록 또는 폐기시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(관수자의 지정) ① (생략) ② 공인의 등록, 재등록, <u>인사발령 등으로</u> 인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(재지정)할 필요가 있을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<u>의거</u> 관수자를 지정하여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 ④ <u>정보통신과장</u> 은 <u>제8조제3항에 의하여</u> 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의 컴퓨터 파일의 부정사용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.	제12조(관수자의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공인의 등록, 재등록, <u>인사발령 등으로</u> 인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(재지정)할 필요가 있을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<u>따라</u> 관수자를 지정하여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하여야 한다.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정보화담당관</u> 은 <u>제8조제3항에 따라</u> 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의 컴퓨터 파일의 부정사용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.
제13조 (생략)	제13조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인영의 보존)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,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<u>의거</u> 인영 대장에 날인하여 공인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</p> <p>제15조(공인의 날인) ①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,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, 결재문서와 <u>일치여·부등을</u> 대조 <u>심사후</u> 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("발행·발급·발신등" 이하 같다)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등·초본 등</u> 민원서류와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날인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.</p>	<p>제14조(인영의 보존)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,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<u>따라</u> 인영 대장에 날인하여 공인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</p> <p>제15조(공인의 날인) ①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,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, 결재문서와 <u>일치여부 등을</u> 대조 <u>심사 후</u> 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("발행·발급·발신 등" 이하 같다)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등·초본 등</u> 민원서류와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날인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.</p>
<p>제16조(공인의 폐기) 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<u>기타의</u>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<u>의거</u>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그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.</p>	<p>제16조(공인의 폐기) 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<u>그 밖의</u>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<u>따라</u>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그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(생략)</p> <p>제17조(공인의 사고 <u>보고등</u>)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, 분실 또는 허위 변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고공인명, 사고발 생일시, 장소, 사고내용, 사고후의 <u>처리전말등</u>을 기재하여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18조(인영의 인쇄사용) ① <u>제5조의 규정에 의거</u>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<u>당해기관</u>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인쇄하여 사용하되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인쇄용도, 인쇄량, <u>인쇄공인규격등</u>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처리과의 장은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공인의 사고 <u>보고 등</u>)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, 분실 또는 허위 변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고공인명, 사고발 생일시, 장소, 사고내용, 사고후의 <u>처리전말 등</u>을 기재하여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18조(인영의 인쇄사용) ① <u>제5조에 따라</u>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<u>해당기관</u>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인쇄하여 사용하되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인쇄용도, 인쇄량, <u>인쇄공인규격 등</u>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처리과의 장은 <u>제1항에 따라</u>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현장에 문서생산담당직원이 입회·감시하여 인쇄물 <u>유출사고 등</u>을 방지하고,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고, 인쇄물은 처리 과의 장의 매수확인을 <u>받은 다음</u> 사용한다.(공인을 찍은 문서를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도 인영의 인쇄시와 동일한 절차로 시행 한다.)</p> <p>제19조(계인의 사용) 계인의 사용은 개별법령상에 계인을 날인토록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며 <u>증명발급등</u>의 일반사무처리에는 계인을 사용하지 않는다.</p> <p>제20조 (생략)</p>	<p>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현장에 문서생산담당직원이 입회·감시하여 인쇄물 <u>유출사고 등</u>을 방지하고,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고, 인쇄물은 처리 과의 장의 매수확인을 <u>받은 다음</u> 사용한다.(공인을 찍은 문서를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도 인영의 인쇄시와 동일한 절차로 시행 한다.)</p> <p>제19조(계인의 사용) 계인의 사용은 개별법령상에 계인을 날인토록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며 <u>증명발급 등</u>의 일반사무처리에는 계인을 사용하지 않는다.</p> <p>제20조 (현행과 같음)</p>
부칙	부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	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행정업무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규정

제40조(공인)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(公印)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에 따른다.